

**브리핑**

2024년 2월 21일(수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 안건]

가. 지상파방송정책과

김성환 과장(2110-1420)

[보고 안건]

가. 통신시장조사과

조주연 과장(2110-1530)

**2024년 제9차 위원회 결과**

□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,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

**[의결 안건]**

가. (주)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(안)에 관한 건

- 일진다이아몬드(주)가 제출한 (주)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·의결함

**[보고 안건]**

가.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에 관한 사항

- 사업자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「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 개정(안)을 보고함
-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3조의 예외기준을 신설함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3조(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)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1. ~ 3. (생 략)</p>	<p>제3조(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</u></p> <p>2. ~ 4. (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)</p>